

추 가 약 정 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유니온저축은행 앞

20 년 월 일

채 무 자 : (인)
주 소 :

채무자는 유니온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 합니다.)과 약정한 20 년 월 일자 여신거래약정서(가계용)에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합니다.

제1조 (목적) ① 이 약정서는 **1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하고 있는 세대^{주1)}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채무자(또는 그 배우자)가 기존주택 보유 사유가 인정되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하 ‘규제지역’) 소재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이하 ‘신규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하여 저축은행과 체결하는 대출거래에 대한 추가 약정입니다.

② 제1항의 추가 약정에 의해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이 기존 보유 주택과 신규주택에 각각 주민등록 유지(이하 ‘거주’, 신규주택에 3개월 이내 전입 포함) 및 이를 입증하는 조건으로 기존 보유 주택 또는 신규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주1) “세대”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세대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및「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포함)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제2조 (대상 주택)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1건**의 주택과 **신규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 보유 주택

주택종류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주소
		거주자 :

② 신규주택

주택종류	소유자 (차주와의 관계)	주소
전입예정일		전입(예정)자 :

- ③ 채무자는 전입(예정)시기 및 저축은행이 정한 시기별로 제2항에 명시된 신규 주택에 채무자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의 거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3조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나,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제2조 제1항 기존 보유 주택 및 제2조 제2항 **신규주택에 각각 거주해야 하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채무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	--

제4조 (거주 대상 주택 거주 의무 등)

- ① 채무자는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2조 제1항의 기존 보유 주택에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②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2조 제2항의 신규주택에 대출 실행일 기준 (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거주하도록 해야 합니다.
- ③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차주와 개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인 경우, 신규 주택에 당초 전입한 세대원 등이 거주하지 않으면 제2조 제1항 또는 제2조 제2항의 주택을 처분(명의 이전 완료)해야 합니다.
- ④ 채무자는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무주택자인 세대구성원인 경우, 개별 세대를 구성한 이후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 ⑤ 채무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거주 의무 등의 이행에 따른 증빙자료를 다음 각 호의 시기별로 저축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신규주택에 대한 3개월 이내 전입의무 : 3개월 이내 전입 즉시
 2. 신규 주택 미거주에 따른 처분의무 : 전출일로부터 1년 이내
 3. 기존 세대 및 개별 세대의 1주택 보유의무 : 대출실행일(중도금·이주비 대출인 경우 신규 주택 준공 후 소유권 이전 등기일 기준)로부터 3개월 이내

제5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저축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본 대출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하게 되고, 그에 따라 채무자는 본 대출을 즉시 변제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4조 제1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2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

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3항의 거주 의무 또는 처분의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4항의 1주택 보유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3조에 명시된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 아닌 경우
6. 채무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대출실행일 기준으로 제2조 제1항에 명시되지 않은 주택(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을 보유^{주2)}하고 있는 경우
주2) 다만 대출신청일 이후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7.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

제6조 (여신거래 약정위반)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대출 완제여부에 관계없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자의 약정 위반 사실이 제공되며, 제공일로부터 향후 3년간 금융기관^{주3)}의 주택 관련 대출^{주4)}이 제한됩니다.

주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4)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별표5> 제1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등

1.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거주자가 제4조 제1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2항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3항의 거주 의무 또는 처분의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전입(예정)자가 제4조 제4항의 1주택 보유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제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거주 의무 이행에 따른 제4조 제5항의 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위장전입으로 확인이 된 경우